

창원지방법원 2019. 9. 18 선고 2018가단1059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판결 선고 2019. 9. 1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8.10. 20. 접수 제330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: 별지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강종선

별지